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658(본소), 2019가합27080(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샘

담당변호사 송수연, 김명선

피고(반소원고)1. B

2. C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효성, 최익준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준호, 황성하, 정윤채

변론 종결2021. 3. 11.

판결 선고2021. 4.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C은 98,902,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0%는 피고(반소원고) C이,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64,2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64,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년 동안 약정이자율을 월 1%(연 1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19. 4. 18.경 원고에게, 피고 B은 자필로 "1억 5천만 원 차용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피고 B 본인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피고 C은 자필로 "1억을 차용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피고 C 본인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필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문구와 서명을 기재한 이 사건 1 차용증 및 이 사건 2 차용증을 각각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반환의무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차용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결국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차주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자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19. 7. 1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9. 8. 17.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 B도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된 금액은 1,759,92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2019. 4. 18.까지의 변제 내역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2019. 4. 18.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9. 4. 18.까지 이루어진 피고들의 차용금 변제를 포함하여, 그 때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금전거래를 모두 정산한 후 2019. 4. 18.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의, 피고 C은 100,000,000원의 각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제 항변 중 피고들이 2019. 4. 18.까지 원고에게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한편, 피고들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처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총액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의 총액을 비교하여 피고들의 각 차용금 채무가 전부 또는 거의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이 모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반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액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들 차용금 채무의 약정이자 변제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4. 18. 이후의 변제 관련

살피건대,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9. 5. 8., 2019. 5. 9., 2019. 5. 14., 2019. 5. 20., 2019. 5. 21., 2019. 5. 27., 2019. 5. 28., 2019. 5. 29. 8회에 걸쳐 각 100,000원씩 총 8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 피고 C이 2019. 4. 26. 1,36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변제가 피고들의 각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변제충당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변제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우선, 피고 B이 변제한 위 800,000원은 약정이자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9.부터 2019. 5. 5.까지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836,065원(= 150,000,000원 × 17/366 × 0.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변제에 충당된다. 한편, 피고 C이 변제한 위 1,360,000원은 약정이자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9.부터 변제일인 2019. 4. 26.까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62,295원(= 100,000,000원 × 8/366 × 0.12)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097,705원(= 1,360,000원 - 262,295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2019. 4. 26.을 기준으로 피고 C의 차용금 채무는 차용금 원금 98,902,295원(= 100,000,000원 - 1,097,705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마치 다른 사람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64,2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6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총 64,2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20. 7. 17. 위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최종변제일의 다음날인 201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98,902,29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의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약정이자율이 연 12%임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위 약정이자율 내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약정이자율 내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위 약정이자율 내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섭

판사하석찬

판사권원명